윤리강령

이 강령은 주식회사 티디지(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 및 태도에 대한 윤리적인 사항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1 장 고 객

1.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불만과 건의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만족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 가치 창조에 전념한다.

2.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취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는 진실된 사실만을 제공하며, 허위 사실의 유포나 허위 정보의 제공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한다.

4. 모든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 2 장 주 주

1.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한다.

제 3 장 상생협력

1.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래문화를 조성한다.

(1) 협력회사를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선이 아닌 공동의 이익으로 인식한다.

(2)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률을 준수하며, 계약이 상호 공평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한다.

(1)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2) 협력업체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업체의 정당한 요구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3.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우리의 경쟁력의 기반이 되므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협조한다.

(1)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며 협력회사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인식한다.

(2) 협력회사를 선정함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도록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 4 장 공정경쟁

1. 공정한 경쟁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짐을 인식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

(1) 경쟁사와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2) 회사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시장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경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한다.

2.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1) 회사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경쟁우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전임직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5 장 사회적 책임

1. 회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서 사회윤리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1)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2)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 정보, 인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모든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3) 회사는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윤리를 존중하며 인재를 확보함에 성별, 학력, 지역, 국적, 장애 등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2. 회사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장려하고 사회와 국민에게 기여한다.

(1) 회사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좋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사회와 국민에게 기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자원봉사나 국내외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한다.

3. 회사는 친환경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1) 회사는 모든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줄이고 환경을 조전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6 장 임직원의 권익 보호

1. 회사의 전임직원은 「고객중심」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전임직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하고,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3. 회사는 적정한 근로시간을 유지 등 회사와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용조건을 보장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1)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 개선을 위한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하고 성과와 자질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임직원들은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평하게 보상하는 교육과 인사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2) 평가는 임직원의 성과와 자질을 정당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며 그에 따른 평가 기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1) 개방적인 의사소통체계를 윤영하고 조직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전임직원은 상호 간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성희롱,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전임직원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비방이나 명예 훼손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 7 장 부정부패 방지

1. 회사 및 전임직원은 부정부패 예방 및 방지가 고객의 이익 및 경쟁력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부정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전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불법적인 이윤 제공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2) 고객확보를 위하여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업무에 임한다.

(4) 협력업체는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회사는 전임직원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반부정부패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전임직원은 이를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3. 전임직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전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전임직원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접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 즉시 내부신고담당에게 신고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시기

이 윤리강령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소급적용

윤리강령 시행 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3. 포상 및 징계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 포상하며,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한다.